

2018년도

2018년 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9차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8. 9. 14.(금요일), 13: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서연호(위원장), 김영운, 정해임, 정형호,
한경자, 한상일, 허순선, 심승구, 양종승,
유영대, 정종수 (이상 11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 의 사 항】

1	국가무형문화재 제56호 ‘종묘제례’ 명예보유자 인정	공개
---	------------------------------	----

【검토사항】

1	‘김천금릉빛내농악’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비공개
---	-------------------------------	-----

2	‘남원농악’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비 공개
---	---------------------------	------

3	‘정읍농악’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비 공개
---	---------------------------	------

4	‘해남대흥사표충사향례’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비공개
---	---------------------------------	-----

5	국가무형문화재 제85호 석전대제 전승 현안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 검토	비 공개
---	--	------

심 의 사 항

심의사항

안건번호 무형2018-09-001

1. 국가무형문화재 제56호 ‘종묘제례’ 명예보유자 인정

가. 제안사항

국가무형문화재 제56호 ‘종묘제례’ 명예보유자 인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18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7차 회의('18.7.27.)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56호 ‘종묘제례’ 보유자 이형열을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2018.8.8.~)하고, 명예보유자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국가무형문화재 제56호 종묘제례
- 지정일자 : 1975. 5. 3.
- 전승자 현황
 - 보유자(2명) : 이기전('34년생, 남 / 집례, '00.12.14. 인정)
이형열('37년생, 남 / 제수·제기, '00.12.14. 인정)
 - 전수교육조교(1명) : 이강덕('60년생, 남 / 집사, '96.7.1. 인정)

2) 확인조사 개요

- 기 간 : 2018.7.17.(화)
- 장 소 : 보유자 자택(경기도 용인시)
- 확인자 : 황상원 사무관, 김진희 주무관(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조사대상자 : 이형열('37년생, 남 / 제수·제기, '00.12.14. 보유자 인정)

3) 확인결과

- 이형열 보유자는 고령과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렵고, 본인이 명예보유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확인

4) 예고사항(관보 제19314호 / 2018.8.8. / 문화재청 공고 제2018-268호)

- 인정예고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가·예능	주소
제56호 종묘제례	명예보유자 인정	이형열 (李亨烈)	남	1937.10.6.	제수, 제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곡현로 ***

- 예고 사유

- 국가무형문화재 제56호 종묘제례 보유자 이형열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보유자로서의 원활한 전승활동이 어렵고, 본인이 명예보유자로 인정받기를 원함에 따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5) 예고 결과 : 이의제기 없음

라. 심의사항 : 이형열 보유자의 명예보유자 인정 여부

마. 의결사항

- 가결함
 - 이형열을 국가무형문화재 제56호 ‘종묘제례’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원안가결 10명

끝.

검 토 사 항

검토사항

안건번호 무형2018-9-002

1. ‘김천금릉빛내농악’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검토사항

안건번호 무형2018-9-003

2. ‘남원농악’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검토사항

안건번호 무형2018-9-004

3. ‘정읍농악’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검토사항

안건번호 무형2018-09-005

4. ‘해남대 흥사표충사향례’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검토사항

안건번호 무형2018-09-006

5. 국가무형문화재 제85호 석전대제 전승 현안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 검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